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설명서

- 이 설명서는 중개형 ISA를 가입하기 전에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이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여야 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는 위의 사실을 숙지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투자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소득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에 근거하여 체결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상품에 대한 주요설명사항

주요설명사항	내 용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중개형 ISA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상품형태	위탁계좌	일임계약	신탁계약	
	운용 주체	고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소속 투자자산운용사	수탁사(증권사 등) 소속 투자자산운용사	
	운용 방법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직접 운용	회사가 정한 포트폴리오 대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	1:1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운용지시대로 운용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중개형 ISA계좌 내 개별거래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위험등급	유의사항	중개형 ISA 계좌 내 편입자산에 따른 분류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	원화채권/전자단기사채
	1등급 (매우높은위험)	해당 상품은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인 공모 집합투자증권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 국내상장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ETN, 원금비보장 종목형 ELS, DLS	신용등급 (B+이하)
	2등급 (높은위험)	해당 상품은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높은 위험인 공모 집합투자증권	국내상장주식, ETF, 원금비보장 지수형 ELS, DLS	신용등급 (BB+~BB-) /투기등급포함 (B+이하)
3등급 (다소높은위험)	해당 상품은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소 높은 위험인	80% 이상 원금부 분보장형 파생결합	신용등급 (BBB+~BBB-)	

		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공모 집합투자증권	증권	/A3+~A3-
	4등급 (보통위험)	해당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보통 위험인 공모 집합투자증권	당사발행 원금지급형(100%이상) ELB, DLB	신용등급 (A+~A-) /A2+~A2- 원화RP
	5등급 (낮은위험)	해당 상품은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낮은 위험인 공모 집합투자증권		신용등급 (AA+~AA-) / A1
	6등급 (매우낮은위험)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매우 낮은 위험인 공모 집합투자증권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신용등급 (AAA)

3. 상품개요 (중개형ISA)

상품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
의무가입기간	3년
계약기간	5년, 만기 3개월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별도의 제한 없음)
최소가입금액	1원 이상
편입가능금융상품	RP, 예탁금, 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사채(ELS, ELB, DLS, DLB, ETN 등), 리츠, 국내상장주식, 채권(사모, CB, EB, BW, CD, CP제외) 등 ※ ISA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ISA를 통한 공모주 청약 가능 ※ 공모형 상품만 편입 가능
보수/수수료	중개형ISA계좌 관리에 따른 보수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와 매매수수료는 징수됩니다.(과표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단, 편입 금융상품별 중도해지수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좌에 편입되는 개별 상품에 대한 구조와 성격, 보수, 비용, 수수료, 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개별 상품의 일반적·구체적 투자위험,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상품별 운용자산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입대상 유형별 주요내용(근거법령 : 조특법 제91조의18, 1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3조의4)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손익통산 합계)	200만원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계좌 내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됩니다.			
가입요건 (거주자에 한함)	단,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 적 있는 경우 가입불가			
	만19세 이상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8세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직전연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의 농어민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1) (서민형,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			

	2)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이후 계약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해지일까지 세제혜택 부여)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시 그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음)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총 납입한도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계약금액 한도 포함 - 당해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가능
거래가능상품	RP, 예탁금, 공모펀드, ETF/ETN, 파생결합증권/사채(ELS, DLS, ELB, DLB 등), 리츠, 국내상장주식, 채권(사모, CB, EB, BW, CD, CP제외) 등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① 대상자산별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한 매매차익, ② 각 투자대상자산별 배당소득, ③ 각 투자대상자산별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일괄과세(손익통산)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유형별(일반형 -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소득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 각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계좌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시점의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원미만 절사)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 중도해지(인출)시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 처리)
유의사항	■ 증권 일부 제권리행사시(유상청약 등) 납입한도 초과로 별도의 계좌로 처리한 경우 별도처리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요 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 해당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는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본의 손실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산위험	■ 발행회사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리금의 지급지연 및 전부 또는 일부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등의 중도상환시 공정가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위험	■ 위탁자가 운용자산의 만기 이전에 환매·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 또는 상품취급기관의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 주식 투자시 투자수익률은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불안, 통화와 금리, 신용위험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과거의 수익률과 이에 기초한 전망이 미래의 투자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감면세액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

	<p>■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계약해지</p>	<p>■ 중도해지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는 계약간 만료 전에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의무 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의 잔존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4.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해지(단,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5.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p>■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기간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계좌내 금융상품을 계약만기일부터 즉시 환매·매도해야 합니다. 3. 의무보유기간 3년, 만기는 5년이나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4. 계좌해지 또는 계좌만기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5. 세제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30일)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됩니다.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 합니다. 7. 고객이 만기에 환매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매각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미적용됩니다. 8.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 특별중도해지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2. 특별해지 사유는 1) 가입자의 사망 2)해외이주 3)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판매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 입니다.
<p>만기연장</p>	<p>■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별도의 제한 없음)</p> <p>■ 만기 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봅니다.</p> <p>■ 일반형/서민형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p> <p>■ 만기연장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p>
<p>계좌이전</p>	<p>■ 타사 또는 다른 유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p> <p>■ 이전시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p> <p>■ 계좌 이전은 현금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이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금액만 이전은 불가합니다.</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계좌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이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됩니다.(세액공제 한도 내)</p>
<p>부적격통보</p>	<p>■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4에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가입자 대상여부 : 다음연도 2월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 다음연도 4월 30일 - 만 15세이상거주자 근로소득 요건충족여부 : 다음연도 8월 31일 <p>■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이 소멸 혹은 추징,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p> <p>※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 받은 날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p> <p>※ 부적격자인 경우 세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됩니다.</p>
<p>유상신주청약</p>	<p>■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금전(납입한도 내 추가입금 금액 포함)으로 청약가능</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청약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 납입 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별도 계좌에서 별도계좌 내 금전으로 유상신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상신주 청약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별도계좌로 나누어 청약은 불가하며, 개인종합자산계좌 또는 별도계좌 중에 선택하여 한 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계좌에서 청약된 청약자금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계좌에서 청약되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입고된 신주는 입고 즉시 별도계좌로 출고되고 이 또한 과세특례에서는 제외됩니다.</p>
<p>기타투자자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법령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은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ISA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재산(예: ELS등)을 편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환매·매도하지 않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환매·매도하지 못한 재산은 현금화가 여의치 않아 납입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현금화를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서민형 또는 농어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연도의 상반기 중에는 전년년도 소득 확인 증명서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적합한 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통보 받을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7. 계좌내 편입자산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

(※ 개별자산에 따라 권리부여 여부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개별상품별 약관 및 설명서 참조)

(1) 청약철회권

구분	내용
정의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고난도 단위형 펀드, 고난도 일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계약 체결일 단,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 불가.
행사방법	고객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
행사효과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이미 받은 금전에 더하여 지급함.

(2) 위법계약해지권

구분	내용
정의	금융소비자는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판매규제 위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요구 기간	1)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2) 계약서류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등 납부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
행사방법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 ※ 우편, 팩스나 전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전자우편 제외)
행사효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함.
법적효과	1) 금소법상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2)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으며 시장의 특성상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3)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 부과 불가

(3) 자료열람 요구권

구분	내용
정의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녹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행사방법	열람 목적,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열람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규정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요청 1) 열람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자료의 내용 : 상기 1)의 내용과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간의 연관성 기재
행사효과	자료 열람을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 함 단,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 함. ※ 자료 열람의 제한 사유 1) 법령에 따른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의 부적절한 경우
기 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음

(4)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 인터넷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관련 규정과 당사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